202.61호

행 정 명 령

법률의 일시 중지 조치 및 수정 유지
재난 비상 상황에 관한 사항

2020년 3월 7일 본인이 뉴욕주 전 지역에 주 재난 비상 상황을 선포하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 202호를 발령함**에 따라**,

뉴욕주에서 코로나19의 여행 관련 및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발견되었고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따라서 오늘 저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주 비상시 법률, 조례의 특정 조항, 명령, 규칙 또는 어느 기관의 규정 또는 그 일부의 준수가 비상사태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방해, 저해 또는 지연시킬 경우, 혹은 이러한 비상사태 대응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러한 조항을 일시 정지 또는 수정시키기 위해 행정부법(Executive Law) 제2-B조 제29-a항에 의해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다음 법률을 본 행정명령일부터 2020년 10월 9일 금요일까지 일시 정지 또는 개정합니다.

- 공중 보건법(Public Health Law) 제579항의 세부조항 1은, 미국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또는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에 의료 현장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도록 권한을 받고 공중보건법 제576-c항 및 뉴욕법(New York Codes, Rules and Regulations, NYCRR)의 10장 제58-1.14항에 따라 보건부에 의사 진료실 실험실로 등록된, 면허가 있는 의사, 정골 요법 의사, 치과 의사, 조산사, 임상 간호사 또는 검안사를 포함한 추가적인 임상 실험실의 코로나19 및 독감 검사 결과를 즉시(3시간 이내)에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수정됩니다. 단, 이는 코로나19 검사와 관련된 경우에 한하며 아래 지침으로 필요한 학교 출근 및 고용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한 것으로 한합니다.

또한, 행정부법 2-B조의 제29-a항에 의해 비상사태 기간 동안 재난을 다루는 데 필요한 명령을 발행할 수 있는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지침을 2020년 10월 9일 금요일까지 발행합니다.

- 보건부 의사 진료실 실험실 평가 프로그램(Physician Office Laboratory Evaluation Program)으로 코로나19 또는 독감 검사를 단독으로 또는 기타 모든 검사와 결합하여 수행할 것을 허가받은 모든 면허가 있는 전문가는 결과가 나오면 이러한 결과를 즉시(3시간 이내) 보건부에 전자 임상 실험실 보고 시스템(Electronic Clinical Laboratory Reporting System, ECLRS)을 통해 보고해야 합니다.
    - 또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할 권한이 있는 모든 전문가는 그러한 개인이 학교에 출석하는지 묻지 않고 그러한 검체를 채취하거나 검사를 수행하면 안 되며, 만일 해당 개인이 학교에 출석한다면 어느 학교에 가는지 묻고 그러한 데이터를 전자 임상 실험실 보고 시스템에 보고해야 합니다. 직장의 위치에 관해서, 또한 그 개인이 초등학교, 중등학교, 중등 이후의 학교에서 일하거나 봉사하는지 물어야 하며, 만일 그렇다면 그러한 데이터를 전자 임상 실험실 보고 시스템에 보고합니다.
    - 또한 코로나19 검사를 관리할 권한이 있는 모든 전문가는 해당 개인의 주소가 개인의 영구 주소와 다를 경우, 이에 대해 질문하지 않고 해당 검체를 채취하거나 검사를 수행할 수 없으며, 그러한 지역 주소를 전자 임상 실험실 보고 시스템에 보고해야 합니다.

- 뉴욕주에 있는 모든 허가된 실험실에서는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검체를 단독으로 또는 다른 전염성 질병에 대한 검사와 함께 처리하기 전에 출석하는 학교 또는 모든 성인의 고용 장소 또는

봉사활동 장소에 대한 정보를 해당 검체와 함께 해당 실험실에 전달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전자 임상 실험실 보고 시스템을 통해 주 보건부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 뉴욕주의 모든 지방 보건부는 매일 보건부에 보건부가 정한 양식 및 방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하며, 고등 및 저중등 교육 기관과 교육구의 학생, 교사인 모든 개인 및 학교 고용인 또는 자원봉사자인 모든 코로나19 검사 및 진단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일 보고서에는 보건부 커미셔너가 고등 및 저중등 교육 기관, 학교 및 교육구 내에서 코로나19 발생을 추적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모든 데이터 요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모든 학교 및 교육구는 보건부에서 결정하는 양식과 방식으로, 학생, 교직원 및 기타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들의 모든 코로나19 검사 및 진단을 매일 보건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일 보고서에는 보건부 커미셔너가 해당 학교 및 교육구 내에서 코로나19 발생을 추적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모든 데이터 요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지역사회 및 단기 대학, 대학교, 대학원 및 전문 학교, 의과 학교, 기술 학교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고등 교육 기관은 매일 보건부가 정한 양식 및 방식으로 보건부에 보고해야 하며, 모든 캠퍼스 내 학생, 교직원 및 모든 기타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의 코로나19 검사 및 진단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일 보고서에는 보건부 커미셔너가 해당 고등 교육기관 내에서 코로나19 발생을 추적하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한 기타 데이터 요소가 포함되어야 하며, 추가로, 해당 기관의 양성 사례가 100건에 도달하면 보건부에 추가 통지가 필요합니다.

- 코로나19 검사를 관리 또는 처리할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이로써 발행된 모든 지침, 수정 또는 일시 중지는 다른 전염성 질병과 결합한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미국 식품의약국 승인 방법에 적용됩니다.

- 모든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 유권자가 대면 투표자와 함께 줄을 서서 기다리지 않고도 표기를 완료한 부재자 투표 용지를 선거관리위원회, 사전 투표소, 또는 선거 당일 투표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대면 투표 현장의 지연을 최소화하고 비대면 투표를 촉진할 것입니다. 2020년 9월 21일까지 계획을 뉴욕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 후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과 웹사이트에 이 내용을 공개해야 합니다.

- 유권자가 편지, 이메일, 팩스, 전화, 인터넷 또는 전자적으로 부재자 투표를 신청했기 때문에 유권자가 종이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2020년 법률 91장 및 138장 및/또는 행정명령 202.58호의 조항에 따라 발행된 모든 부재자 투표용지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유권자에게 투표용지와 종이 부재자 투표 신청서를 보낼 필요가 없으며, 해당 유권자는 투표용지를 받기 전 또는 받았을 때 종이 신청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 뉴욕시의 3단계 일부로 실내 음식 서비스 및 식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 202.41호에 포함된 지침을 수정한 행정명령 202.48호의 지침은 2020년 9월 30일부터 뉴욕시의 실내 음식 서비스 및 식사를 허용하도록 수정되었으며, 보건부 및 기타 적용 가능한 주 발행 지침을 엄격히 준수함에 한합니다.

2020년 9월 9일 올버니시에서 본인이 서명하고 주

정부 관인을 날인하여 선포합니다.

주지사

주지사 비서